

대전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가단80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조합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2. 1. 24. 접수 제10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가 아니라 수익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권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건물의 번호 :

[고유번호:]

구조 및 연적 : 철근콘크리트조

124.87㎡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83353.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83353.4분의 61.763

가사라

2021. 11. 11.

